

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(황운하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0884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8. 28.

발 의 자 : 황운하 · 장종태 · 이강일
용혜인 · 서왕진 · 정춘생
김준형 · 차규근 · 강경숙
신장식 · 김선민 · 김재원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형건설기계(5톤 미만의 불도저, 3톤 미만의 지게차, 굴삭기등)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경우에는 시·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소형 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의 이수로 면허 획득 조건 중 하나인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기술자격의 취득을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일부 학원에서 6~16시간의 정해진 실습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교육이수증을 허위로 발급하는 문제점이 있으나 해당 지정교육기관에 대한 제재수단이 없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.

이에 소형건설기계의 교육기관에 대한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교육기

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소형건설기계 운행 및 관리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(안 제26조제5항 및 제36조제2호의2 신설 등).

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건설기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6조제4항 중 “시·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”을 “시설, 인력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으로서 시·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6항(종전의 제5항) 중 “적성검사의 기준,”을 “적성검사의 기준, 제4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에 따른 세부절차 등”으로 한다.

⑤ 시·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지정받은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.

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
2. 제4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
3. 거짓이나 부정으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발급한 경우
4. 업무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업무정지 기간 중에 교육을 한 경우

제36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의2. 제26조제5항에 따른 교육기관 지정의 취소 및 업무의 정지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6조(건설기계조종사면허) ① ~ ③ (생 략) ④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형 건설기계의 건설기계조종 사면허의 경우에는 <u>시·도지사</u> <u>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실시</u> <u>하는 소형 건설기계의 조종에</u> <u>관한 교육과정의 이수</u>로 제3항 의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기술자격의 취득을 대신할 수 있다. <u><신 설></u>	제26조(건설기계조종사면허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----- ----- -----<u>시설, 인력</u> <u>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</u> <u>요건을 갖춘 기관으로서 시·</u> <u>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</u>---- ----- ----- ----. ⑤ <u>시·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</u> <u>지정받은 교육기관이 다음 각</u> <u>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</u> <u>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</u> <u>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</u> <u>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</u> <u>를 명할 수 있다.</u> 1. <u>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</u> <u>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</u> 2. <u>제4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</u> <u>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</u> 3. <u>거짓이나 부정으로 건설기계</u>

⑤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의 발급, <u>적성검사의 기준</u>, 그 밖에 건설기계조종사면허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. 제36조(청문) 국토교통부장관, 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. 1.·2. (생략) <u><신설></u> 3.·4. (생략)	<u>조종사면허를 발급한 경우</u> 4. <u>업무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업무정지 기간 중에 교육을 한 경우</u> ⑥ ----- ----<u>적성검사의 기준</u>, 제4항에 따른 <u>교육기관의 지정에 따른 세부절차 등</u>----- --. 제36조(청문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1.·2. (현행과 같음) 2의2. <u>제26조제5항에 따른 교육기관 지정의 취소 및 업무의 정지</u> 3.·4. (현행과 같음)
---	---